현장 인력 대란이 다가오는가

불법 체류 현장 기능공 추방 - 일손 부족 ‘ 아우성 ’

- 내년 봄 공사 중단 · 임금 폭등 우려, 산업연수생 배정 서둘러야 -

정부는 금년 11월 17일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국내에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일부가 자진 출국한 데 이어 남아 있는 자들도 정부의 단속 조치로 강제 출국되거나 지방으로 잠적하는 등 장기간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하던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 성수기인 내년 3월부터는 건설 기능 인력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과 임금 상승 등 인력 대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단속 실시 이후 건설 현장의 인력난 실상과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년 봄 인력 대란 예고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이후 현장마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입국한 지 6 7년 이상이 된 숙련공인데 이들이 잠적하거나 출국된 후 이들을 대체할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부 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정부 단속 이후 투입 인력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취업자 중 92% 가 아파트 등 주택 건설 현장에 취업해 왔기 때문에 주택 건설 현장이 인력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 문제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을 떠난 외국인들이 작업팀을 이끄는 조장급의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에 작업팀이 와해되면서 남아 있는 인력마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이미 우리 건설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뿌리내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어렵사리 현장을 이끌어간다 해도 동절기를 앞두고 마감 공기에 쫓기는 현장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성수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는 급격한 임금 상승, 공사 중단 등의 사태를 몰고 올 인력 대란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소 4만명 부족할 듯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합법화 대

정부 단속 전후 대비 불법 취업 외국인 투입 현황

구분	공종	정부 단속 이전	정부 단속 이후	현안 문제점
S현장(수도권)	형틀 공사	140 명	20 명	공기 지연 - 공정 사이클이 7 9일이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철수 후 13 15 일(최대 18 일)로 지연되어 현장 운영이 극히 어려움.
	철근 공사	70 명	5명	
	내장 공사		약 50 % 감소	
W현장(지방)	철근 공사	12 명	3명	노임 상승 및 공기 지연 - 외국인이 없어 상대적으로 내국인 부족 현장이 발생하여 내국인의 노임 인상 요구 및 공정 차질 초래
	내장 공사	11 명	2명	
	기타 조적 및 방수 공사		각 1 2명씩 감소	

상자를 국내 체류 4년 미만인 자로 하면서 건설업의 경우만은 외국 국적 동포로 한정함으로써 합법화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합법화 신청을 마감한 결과 건설 분야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 2만 1,000 여 명이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으로 건설업계가 당면한 부족 인력 규모는 최소 4만여 명, 최대 10 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최소 부족 인력 4만여 명은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 인력 중 2002 년 5월 법무부에 자진 신고된 5만 6,000 여 명과 신고 이후 증가된 5,000 명을 합친 6만 1,000 여 명에서 합법화된 2만 1,000 명을 차감한 것이다. 최대 부족 인력 10 만여 명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정한 건설 현장 불법 취업자 최대 13 만여 명에서 합법화된 2만 1,000 명을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부족 인력 규모는 금년 수준의 물량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나 내년도 건설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4.5 %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 인력의 최소치는 4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안이한 정부 인식… 업계는 ‘ 시름 만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은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을 떠난 후의 빈자리를 대체할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지 아니한 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인력난을 초래하고, 그 결과 건설 기업들이 경영상의 애로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범법자가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데 정부 인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

불법 체류자의 출국 시기,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정책 결정상의 실수로 이미 인력난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이의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안이하게 인식 ·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기업들은 시름을 덜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현장의 인력난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고 최소 부족 인력도 4만명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건설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국인의 신규 취업 인력 2만 8,000 명에 합법화 조치로 잔류한 2만 1,000 명과 현재 입국해 있는 산업연수생 6,000 명을 합치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내국 인력의 확충과 함께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취업관리제를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 제시 안은 대책이 못 된다

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대체 인력 중 합법화 조치로 잔류한 2만 1,000 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족 인력 4만명 산정시 이미 차감하였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6,000 명은 건설 현장으로의 신규 유입 인력이 아니라 2003 년 9월 이전에 계속 일하던 인력이므로 대체 인력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내국인 전직 실업자 2만 8,000 명의 신규 유입인데 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신규 유입 인력은 아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매년 8월에는 휴가, 장마 등의 요인으로 취업자가 감소되었다가 9월에는 증가된다. 설사 신규 유입 인력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출국 또는 잠적하기 전에 건설 수요에 맞게 유입되었을 것이므로 대체 인력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취업관리제란 주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 동거(F-1-4) 체류 자격을 부여해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통해 표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관리제에 의한 방문 동거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대부분 입국했을 것이므로 입국 가능한 동포 수가 한정되어 있어 부족 인력 4만명을 충당하기가 어렵다. 또한, 단시일 내에 적기 대체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설사 확보하더라도 기능도가 없거나 낮아 산재 사고와 품질 저하의 우려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국 인력의 활용은 실업 문제의 해소 등

최근 3년의 7 10 월 중 건설 취업자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7월	8월	9월	10월
2003 년	1,843	1,799(△44)	1,820(21)	
2002 년	1,798	1,702(△96)	1,794(92)	1,797(3)
2001 년	1,625	1,606(△19)	1,663(57)	1,665(2)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동향」.

여러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건설업은 이른바 3D (Difficult, Dirty, Dangerous)에 Distant가 추가된 4D 업종으로서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양성하더라도 기능을 갖게 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제시한 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의 중복, 충원 방안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실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연수생 배정 조치 서둘러야

당면한 인력난을 3개월여 만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활용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기왕에 실시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합동 단속을 완화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국내법을 무시하고 단체 행동까지 하는 외국인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자칫 합법화된 인력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엄격한 집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국 인력을 새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는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 산업연수제의 3가지 제도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부터 시행되므로 당면한 인력난 해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취업관리제는 대상 자원의 한정성, 기능도 등의 문제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외국 인력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산업연수제뿐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제 배정에서 도입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되므로 내년 3월 성수기 전에 도입하려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부의 배정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3월의 인력 대란을 막을 수 있다.

김민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 단장

그래픽 뉴스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

자료 : 서울시.

전국 기준 시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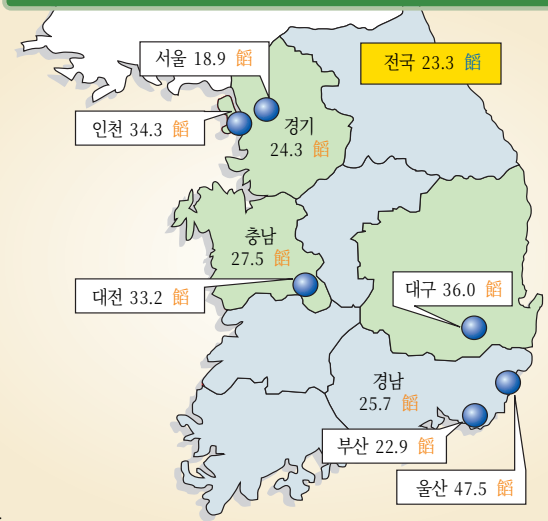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내외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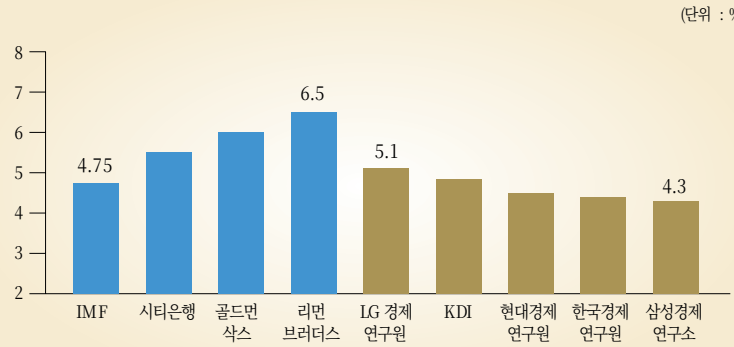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